

강원도립대학교 입학전형 회피·제척 운영 규정

(제정) 2020-11-09 규정 제554호

(개정) 2022-06-14 규정 제60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피·제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입학전형”이란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말한다.
- ② “회피”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(이하 ‘응시생’이라 한다)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려는 것을 말한다.
- ③ “제척”이란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해당 응시생의 선발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“특수한 관계”란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의2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2 등에서 정하는 응시생과의 관계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) ① 입학전형 회피 및 제척 대상 적용 범위는 문제출제, 평가, 감독 등에 관여하는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로 한다.

② 회피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(이하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인 경우
2.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의 지인(학연, 지연, 혈연, 종교, 직연 등 친분관계) 중에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지원한 경우
- ③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 및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지원한 경우는 제척된다.

제4조(회피·제척 운영) ①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매 학년도 입학전형 업무가 시작되기 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징구하며, 서약서 징구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22. 6. 14.>

1. 교무위원회 위원
2. 입시전형관리위원회 위원
3. 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
4. 대학별고사(실기, 면접 등) 전형위원
5. 입학업무 담당 직원(입학, 전산)
6. 기타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진 신고를 안내한다. <개정 2022. 6. 14.>
-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회피 대상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④ 입시공정관리위원장은 연말정산 자료, 인사현황 자료, 가족수당 신청 내역 등을 통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제척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.

⑤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회피·제척 대상자는 입시공정관리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입학관련 업무에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6. 14.>

제5조(최종검증) ① 당해 연도 입학전형 종료 후 연말정산 자료, 인사현황 자료, 가족수당 신청 내역 등을 통하여 최종검증을 실시한다.

② 제4조에 따른 회피·제척 운영 결과와 제1항에 따른 최종검증 결과는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. <개정 2022. 6. 14.>

③ 입시공정관리위원장은 교직원이 회피·제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평가 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22. 6. 14.>

제6조(위반자 조치) 총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해당자에게 관련 책임을 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회피·제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시공정관리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 6. 14.>

부칙(제554호, 2020. 11. 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 운영한 회피·제척 제도는 이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본다.

부칙(제606호, 2022. 6.14.)
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